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0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이성윤 · 허성무
최혁진 · 김문수 · 정준호
이학영 · 박홍배 · 이재정
김 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경복궁 등 궁·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(안 제49조의2제1항).
- 나.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·협박,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안 제49조의2제2항).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관람자에 대한 입장제한 및 퇴장명령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·협박,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9조의2(관람자에 대한 입장제한 및 퇴장명령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·협박,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u>
제10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. (생략)	제103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<u>3의2.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</u>
	<u>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</u>
4. ~ 5. (생 략)	4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